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19.

전라남도지사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2개 이상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 구 명)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간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요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최종 특구지정 전까지 변동 가능

No	사 업 명	내 용
1	(1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APC 직류 배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AI 기반 에너지관리, AC-DC 변환손실 최소화 및 에너지 자립형 운용 기술 개발
2	(2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농업 물류 설비 실증	APC 내 농업 물류 및 부하설비의 직류화를 위해 AMR 충전기, 직류 조명, 컨베이어벨트, 칠러, 고속도 직류 차단기 및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실증
3	(3세부)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연계 배전망 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	영농형 태양광과 스마트농업 DC 배전망 연계를 위해 태양광 설치 여건 분석, DC 기반 계통 기술개발, ESS·축전지 설치 및 DC 배전 최적화 기술 실증
4	(4세부) 스마트농업 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직류배전 기술개발 및 실증	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여건 분석, 태양광 발전 및 농작물 생산성 최적화, 운영·제어 최적화, 직류 배전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지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6. 6. 19.(금) ~ 7. 3.(금)
- 접수기간 : 2026. 6. 19.(금) 09:00 ~ 7. 3.(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처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이메일 접수

기관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 팀장	061-288-1111	yeosh@gei.re.kr
	에너지신산업실 / 연구원	061-288-1115	tjd6795@gei.re.kr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2. (양식2) 보안각서 2.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3. 선정평가

□ (평가방법) 서면 또는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단, 제출 서류 기반 참여 불가 사유가 없을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평가내용)		배점
필요성 (30)	○ 규제사항 해당여부	◦ 실증대상의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15
	○ 실증특례의 필요성	◦ 실증특례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사업추진 체계 (25)	○ 사업추진 역량	◦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특구사업자의 보유 역량과 참여의지	13
	○ 실행가능성	◦ 추진체계 및 추진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12
계획의 적정성 (25)	○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12
	○ 추진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내용,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13
기대효과 (20)	○ 사업화	◦ 수혜기업의 성장 가능성	10
	○ 파급효과	◦ 산업 및 지역으로 기여도	10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6. 6. 19.~ 7. 3.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	'26. 7. 6 ~ 7. 7.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생략 가능)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	'26. 7. ~ '26. 8.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6. 8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기본 정보

혁신사업명	전남 직류전력 기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특 구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608.5km ²)		
지 정 기 간	2027년 ~ 2030년(4년)		
세부사업	사 업 명	내 용	신청 희망 ✓
	(1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APC 직류 배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AI 기반 에너지관리, AC-DC 변환손실 최소화 및 에너지 자립형 운용 기술 개발	
	(2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농업 물류 설비 실증	APC 내 농업 물류 및 부하설비의 직류화를 위해 AMR 충전기, 직류 조명, 컨베이어벨트, 칠러, 고속도 직류 차단기 및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실증	
	(3세부)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연계 배전망 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	영농형 태양광과 스마트농업 DC 배전망 연계를 위해 태양광 설치 여건 분석, DC 기반 계통 기술개발, ESS-축전지 설치 및 DC 배전 최적화 기술 실증	
	(4세부) 스마트농업 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직류배전 기술개발 및 실증	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여건 분석, 태양광 발전 및 농작물 생산성 최적화, 운영-제어 최적화, 직류 배전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	

□ 확인 사항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사업장(연구소, 사무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안각서

1. 본인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전라남도과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전라남도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소 속 기 관 :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전라남도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31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소 속 기 관 :

대 표 자 : (인)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특구사업명	전남 직류전력 기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협단체 ☐ 비영리기관 선택 ■ 표시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수행역할	• <작성요령>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 (특허, 보유기술)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기업만)	• <작성요령>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 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기업만)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1.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가. 제품·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 제품 ☐ 서비스 선택 ■ 표시
실증대상 제품(서비스) 개요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선택 ■ 표시	
	관련법규	- (예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예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기업만)	
-------------------------	--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기업만)	
유사 제품 (기업)현황 (기업만)	☐ 국내 및 국외에 없음 ☐ 국외에 존재 ☐ 국내에 존재 ☐ 조사 해본 적 없음 4개 중 중복 ■ 표시 후 아래 작성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실증특례명	전남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실증 구역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608.5km ²)	지정 기간	2027년 ~ 2030년(4년)

가. 실증 목적 및 대상

실증특례 목적	
실증 대상	

나. 실증 방법

실증 항목 및 내용																																																																																																															
시험·검증 항목 및 방법																																																																																																															
세부 일정	○ 실증일정 - 2027년 실증 일정																																																																																																														
	<table><tr><th rowspan="2">요약</th><th rowspan="2">추진내용 및 범위</th><th colspan="12">추진일정(월)</th></tr><tr><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r><tr><td>실증준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안전확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성능평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분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개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결과보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8년 실증 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9년 실증 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30년 실증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특례 조문	특례 주요내용
실 증 특 례	전 남	(1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	§86-1	- 한국전기설비규정 내 저압 직류 배전 관련 세부 규정 부재 →(특례요청) 한국전기설비규정 243조 저압 옥내 직류 설비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으로 사용전 검사 수행 허용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2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농업 물류 설비 실증		
		(3세부)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연계 배전망 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	§86-1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사업구역 또는 공급구역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불허에 따른 DC배전인프라 구축 불가 →(특례요청) 기존 전력공급구역 내 직류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실증을 허용하도록 특례 적용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
		(4세부) 스마트농업 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직류배전 기술개발 및 실증	§86-1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시공기준 등)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1,000kW 초과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는 품질기준(KS C 8565)을 준용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직류배전용 태양광 발전 전력변환기에 대한 품질 기준이 부재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사용전검사 불가 →(특례요청) 직류배전용 태양광 발전 전력변환기에 대하여 KS 인증 시험성적항목을 준용하되, 직류배전 계통 특성에 맞는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을 보완 적용하여 시험성적서 제출과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 요청 ○관련법령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